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KUMBA 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KUMBA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결속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수도권에 둔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3. 회원명부 및 회보 발간 사업
4. 학술연구 및 그 지원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각급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가. 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KUMBA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
   나. 준회원 중에서 그 의무를 다하고, 본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다. 입회비를 완납하고 당해 동문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가. 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KUMBA 졸업한 자로서 입회비는 완납하였으나 당해 동문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3. 예비회원

가. 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KUMBA에 재적 중인 자로서 입회비 분납금을 성실히 납부한 자

4. 명예회원

가. 본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나. 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KUMBA의 전·현직 교직원

② 한 회원이 두 가지 이상의 회원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회원은 자신이 원하는 자격을 선택하고 이를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3.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4. 예비회원은 총회를 제외한 본회 주관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가지지 않는다.
5.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3장 기구

제8조(임원)

①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2인
3. 당연직 부회장: 각 기수별 대표
4. 사무총장: 1인
5. 감사: 2인

제9조(임원의 선임)

① 본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과 수석부회장, 감사는 동문회에서 추천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2. 선거는 온라인 투표로 진행하며, 총회에서 결과를 공표한다.
3. 회장과 수석부회장, 감사 선출은 온라인 투표 참여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사무총장 및 각 기능별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5. 감사는 2인을 선출하되, 추천에 의한 선출이 없을 경우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공표한다.

② 본회 회장 궐위시는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의거 후임자를 보선한다. 단,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의2(선거관리위원회)

① 임원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시기구로서, 선거 공고일로부터 구성하여 선거 종료 후 30일까지 운영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상임이사의 임기는 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전반을 총괄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부회장은 해당 기수와 본회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본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에 참여한다.
   4. 회장, 수석부회장, 당연직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5. 감사는 본회 회무 및 회계에 관하여 정기 또는 필요에 따라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6. 상임이사는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특정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7.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정적 책임을 진다.
      가. 회장은 1,000만원의 임원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임한 해의 12월 31일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나. 수석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연간 50만원의 임원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그 외 임원은 동문회비(연회비)를 필수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 임원분담금 납부자에게는 해당 연도의 동문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1조의2(당연직 부회장의 선임)

① 각 기수는 본회에 당연직 부회장으로 참여할 대표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기수 대표가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대표는 본회의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③ 각 기수는 대표 선정에 관한 자율권을 가지며, 대표를 선정하지 않거나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당연직 부회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④ 당연직 부회장의 교체나 사임 시에는 해당 기수에서 후임자를 선정하여 본회에 통보한다.

제12조(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

① 본회는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이하 '고문 등')을 둘 수 있으며, 그 선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문: 역대 회장
   2. 명예회장: 전임 회장
   3. 자문위원: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감사를 지낸 임원
② 고문 등은 본회 임원에 준하는 자로서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각급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제13조(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다음과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사무총장: 1인
   2. 기능별 이사: 약간 명
② 회장은 임원중에서 사무총장, 기능별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원활한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에 유급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사무국의 직무)

① 본회 사무국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총장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본회 제반 회무를 집행하며 각 직능별 이사 및 유급 사무원을 지도 감독한다.
   2. 각 기능별 이사는 다음 각 목에 맞는 업무를 관장한다.
      가. 기획이사: 기획위원회를 운영하며 기금 조성에 따른 업무(회비, 찬조금, 임원 분담금 등) 및 모교 발전 사업 등의 업무 관장
      나. 총무이사: 총무위원회를 운영하며 사업 및 사무업무 관장
      다. 재무이사: 재무위원회를 운영하며 입출금 등 재무업무 관장
      라. 홍보이사: 홍보위원회를 운영하여 대외적 홍보 업무를 관장
      마. 학술이사: 학술위원회를 운영하며 대내외적 학술 업무를 관장
      바. 대외협력이사: 대외협력위원회를 운영하며 대내외적 협력 업무를 관장
② 각 기능별 이사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별 위원은 기능별 이사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동기회)

① 본회 산하에 각 기수별 동기회를 둔다.

② 동기회는 본회의 운영을 보조하며, 각 기수별 동기회의 대표는 본회의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제16조(동호회)

① 본회는 산하에 동호회를 둘 수 있다.

② 동호회의 설립, 운영,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회의

제17조(회의)

①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회장단회의로 한다.

②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에 개최하고 회장은 총회기일 15일전까지 본회 홈페이지나 블로그,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으로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 소집

1. 회장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나.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정회원의 임시총회 소집 요청 절차
   가. 정회원은 임시총회 소집 사유와 안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나. 회장은 정회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한 정회원의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임시총회 소집 공고
   가. 임시총회 소집 시, 회장은 총회 개최일 1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회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나. 공고 방법은 본회 홈페이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다.

④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

2. 임원의 선출 결과
3. 사업집행실적 및 결산보고
4.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5. 회원의 포상 및 징계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중요한 사항

제19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 이사로 구성되며 매 반기별 1회 개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개정
2.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3. 사업집행 실적보고
4. 임원의 선출
5. 총회에 보고할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의결
7. 기타 본회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제20조(회장단회의)

① 회장단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으로 구성되며, 회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장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회 회칙개정안 제안
2. 기타 본회 운영상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제5장 재정

제21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으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다만, 특별회비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1. 입회비는 총 200,000원으로 하며, MBA과정 중 매학기 50,000원씩 분납하여야 한다.
2. 회비는 연회비 100,000원 또는 평생회비 1,000,000원 중 선택하여 납부하며, 회비의 납부 기한, 정회원 자격 유지 기간 등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단, 연간 100,000원 이상의 찬조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3. 특별회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회장은 1,000만원의 임원분담금을 납부한다.
나. 수석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연간 50만원의 임원분담금을 납부한다.
다. 그 외 임원은 별도의 임원분담금을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라. 고문 등은 본회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을 납부할 수 있다.
마. 회원은 본회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을 납부할 수 있다.

4. 기부금품 및 찬조금
5. 운영수익 및 기타 수입

제22조(재정의 운영)

① 재정 운영의 기본원칙
1. 본회의 재정은 투명성, 효율성, 안정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2. 재정의 집행은 회장의 책임 하에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재무이사가 수행한다.

② 재정은 다음의 사항에 사용한다. 다만, 경조비의 범위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경비
2. 본회 운영비
3. 사무총장 판공비 및 유급사무원 인건비
4. 기타 부대 경비

③ 감사의 권한과 책임
1. 감사는 본회의 재정 운영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2. 감사는 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무이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중대한 재정 운영 문제 발견 시 즉시 회장과 이사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본회의 재정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장의 책임하에 사무총장이 관장한다.

⑤ 회장은 재정의 증식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연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계연도 개시 시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4조(포상과 징계)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제25조(시행 세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6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2024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종전의 회칙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회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규정외 사항) 본 회칙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4조(개정이력)

① 본 회칙은 2019년 9월 1일에 제정되었다.
② 본 회칙은 2024년 6월 22일에 1차 개정되었다.
③ 본 회칙은 2024년 12월 21일에 2차 개정되었다.